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

2013. 6. 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대표자 정현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이하 “이 사건 집회” 라 합니다)라는 이름으로 2013. 6. 24.부터 동년 7.21.까지 매일 18:00 부터 21:00에 걸쳐 동아일보사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집회장소” 라고만 합니다)에서 약 300 명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집회장소는 비록 인도이지만 1)집시법이 정한 주요 도로에는 인도 역시 포함되고, 2)이 사건 집회장소에 접해 있는 청계로는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및 종로로와 인접한 도로이자 3)종로로->광화문우체국 우회->청계로 동아일보사 정문 앞->세종대로 동아일보 서측 광장 앞->광화문 방향으로 연결된 P턴 도로로서 이 도로 상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세종대로 및 종로로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4)위 P턴 도로 위에는 광화문역을 포함하고 있어 1일 평균 10만명이 이동하는 이 사건 집회가 열릴 경우 매우 혼잡할 우려가 있어(집시법 제12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만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교통소통에의 불편의 불발생

이 사건 집회장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사건 집회장소가 매우 넓어 300명 정도의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넓은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면서도 밝혔지만 전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할 것이기에 이 사건 집회장소에 인접한 청계로나 세종로, 종로로로 진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일반인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지나는 일이나 이 사건 집회와 인접한 청계로, 세종로, 종로로의 차량소통에 방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법리판단의 오류

실사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약간의 교통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회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시위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 : 확정).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에 대한 우려로 어떤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위참가인원 등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방해의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위참가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고려나 조치 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전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집회장소의 경우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에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도 현실적으로 매우 작을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건부과 등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첨 부 서 류

1. 등록증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신청서 부분 1부.

2013. 6. 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서울행정법원 귀 중